

광주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합507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김정완

변 론 종 결 2021. 3. 12.

판 결 선 고 2021. 3.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630,878원 및 그중 145,443,417원에 대하여는 2021. 1. 30.부터, 27,187,461원에 대하여는 2021. 2. 3.부터 각 2021. 3. 2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46,615,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4. 6. 22.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체결

○ 원고는 2013. 9. 25. C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9. 27.부터 2014. 9. 27.까지로, 피보험자를 C로, 담보종목을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피고의 치료비) 지급

○ C는 2014. 6. 22. 15:00경 광주 서구 D 앞 차선 없는 도로를 E마을 방면에서 매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 및 피고 오토바이의 사고현장 약도는 별지 1 그림과 같다). 당시 피고는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좌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등의 상해를 입고, 전남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의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으로 2014. 10. 23.부터 2021. 1. 29.까지 피고의 진료병원에 합계 246,615,54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원고 차량 수리비) 지급 및 구상금 청구의 소 제기

○ 원고는 2014. 7. 30.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585,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4. 10. 7.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원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C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7,585,000원)의 상환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4가소90576호, 이하 ‘구상금 청구의 소’라 한다).

○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5. 10. 30. ‘피고는 원고에게 7,5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다. 위 판결은 2015. 12. 11.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아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비록 전소인 구상금 청구의 소와 후소인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전소인 구상금 청구의 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 등)가 되므로,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쳐 법원은 이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비율을 100%로 본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및 무면허운전 등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교통사고 발생에 원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46,615,540원을 치료비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6,615,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피고는 E마을에서 F농원 방면 도로상에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놓고 도로 우측 아래에서 일을 하다 올라와서 시동을 켜려고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있던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오토바이의 뒤쪽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고 오토바이를 약 10m 정도를 끌고 가서 농로 옆 수로에 빠뜨렸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기판력 주장에 관한 판단

전에 제기된 소와 후에 제기된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에 제기된 소의 소송물이 전에 제기된 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제기된 소에 미친다. 다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전의 소송에서 확정된 법률관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발생할 뿐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의 과실 유무 내지 원피고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에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의 존부와 정반대의 모순되는 사항을 소송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구상금 청구의 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오토바이는 사고 장소 우측 가건물 쪽에서 도로 쪽으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E마을에서 매월동 방향으로 차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오토바이와 원고 차량이 사고 장소에 이르러 별지 2 그림과 같이 피고 오토바이 전면 좌측 업 카울링 및 바람막이 부분이 원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앞 모서리 부분과 1차 충돌한 후 피고 오토바이 차체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피고 오토바이 뒷좌석 짐받이 부분이 원고 차량 조수석 문과 2차 충돌한 후 분리되어 피고 오토바이가 진행 차로 우측 농로로 전도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앞 부분 우측 범퍼, 안개등 하단 및 우측 모서리가 손상되었고, 조수석 문이 충돌로 인하여 찌그러지고 가로 방향으로 찢겼다. 피고 오토바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뒷좌석 짐받이 좌측 부분이 휘어지고, 앞 부분 좌측 업 카울링 및 바람막이 부분이 균열되고 이탈되었다.

○ 만약 피고 주장처럼 원고 차량이 정지해 있던 피고 오토바이를 뒤에서 충격하였다면, 원고 차량은 앞부분이, 피고 오토바이는 뒷부분이 주로 파손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차량은 앞부분 우측 범퍼 및 모서리뿐만 아니라 조수석 문이 함께 파손되었고, 피고 오토바이는 뒷좌석 짐받이 왼쪽뿐만 아니라 앞부분 좌측 업 카울링 및 바람막이 부분이 함께 파손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조수석 문과 피고 오토바이 앞부분 좌측 업 카울링 및 바람막이 부분이 파손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만약 피고 주장처럼 원고 차량이 정지해 있던 피고 오토바이를 뒤에서 충격하였다면, 원고 차량의 앞부분과 피고 오토바이의 뒷좌석 짐받이 부분이 최초로 충돌하여야 한다. 그런데 손상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앞 모서리의 높이(약 26~54cm)는 피고 오토바이의 뒷좌석 짐받이의 높이(약 85cm)와 맞지 않는다.

○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충돌 상황 등을 고려하면, ① 피고 오토바이는 우회전을 하기 전 직진 방향의 차량 진행상황을 살펴 서행하거나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③ 원고 차량이 차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 농로에서 진입하여 우회전하려던 피고 오토바이와 충돌한 점, ④ 원고 차량은 진행도로 우측에 농로, 건물 진출입로 등이 있고 주변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였더라면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의 피해를 축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 노면에 사고와 연관된 굵은 흔적 및 타이어 흔적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이 사고 당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오토바이와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전후의 사정, 원고 차량과 피고 오토바이의 손상 부위 및 형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30%, 피고 오토바이 7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치료비 가지급금

246,615,540원에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30%)에 해당하는 금액인 73,984,662원(= 246,615,540원 × 30%)을 뺀 나머지 172,630,8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원고는 보험금 최종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21. 1.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72,630,878원과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207,776,310원 중 피고의 과실 비율(70%)에 해당하는 145,443,417원(= 207,776,310원 × 0.7)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추가로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38,839,230원(= 246,615,540원 - 207,776,310원) 중 피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27,187,461원(= 38,839,230원 × 0.7)에 대하여는 위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1. 2. 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별표 3>은 피해자측의 과실상계 후 지급할 보험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할 경우 치료관계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라 한다).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라도 경합한 경우라면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피해자에게 치료관계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과실비율에 따라 초과하여 지급한 치료관계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C의 과실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관계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 설령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진료비를 보상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관계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에 근거한 치료관계비 상당액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의 보상내용에 대해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3> 중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 “(1) 이 기준의「대인배상 I」,「대인배상 II」,「대물배상」및「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대인배상 I」,「대인배상 II」및「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는 등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이하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이 경우 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배상액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보험약관상 보험금 산정규정의 취지와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또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금 가운데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이 정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치료비 지급이 피고와의 합의로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치료관계비 상당액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이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은 상해급수별로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최대 20,00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의 치료비 합계액 246,615,540원에서 그의 과실비율(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은 73,984,662원[= 246,615,540원 × 30%(원고 차량 과실비율)]으로 계산되고, 그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책임보험금의 최대 한도액인 20,000,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수 중 몇 급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규정은 이 사건 청구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액은 피고의 치료비 합계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70%)에 상응하는 금액인 172,630,878원(= 246,615,540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계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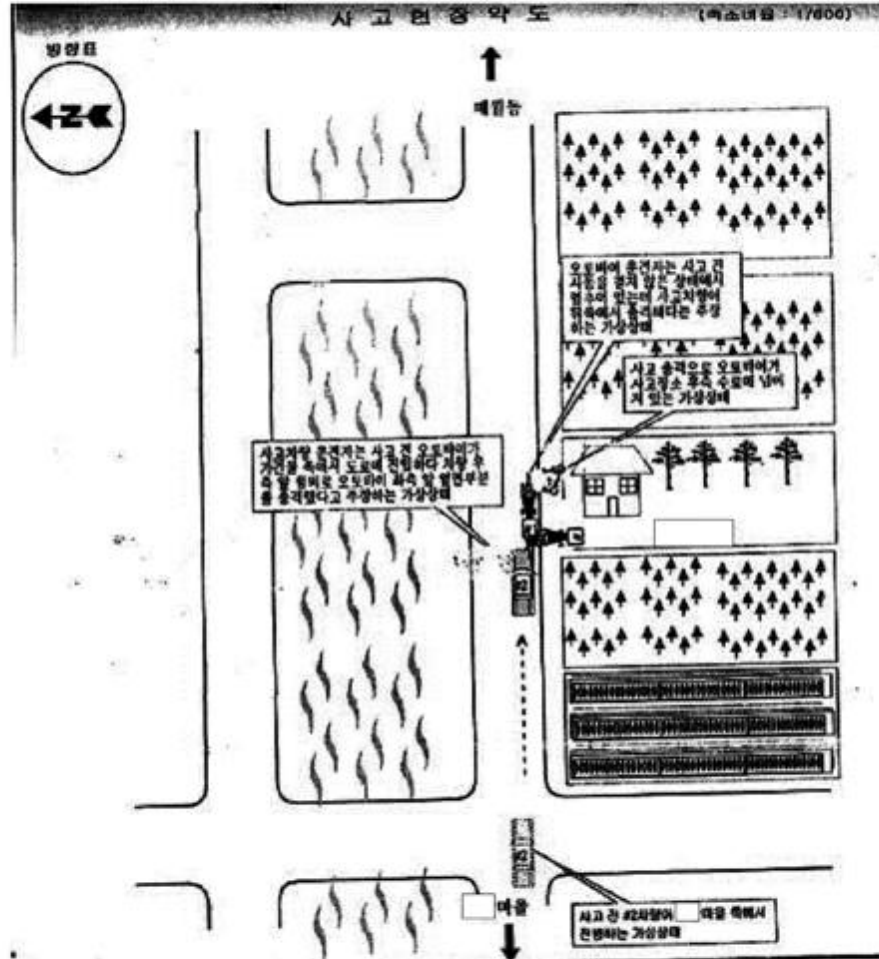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일호, 판사 이제승, 판사 김동희

[별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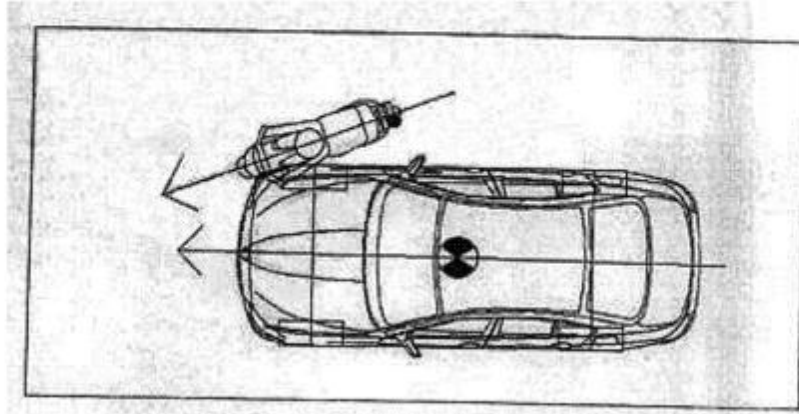
사고현장 약도



끝.

[별지 2]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최초 충돌 형태



끝.